

주중회원 약관

제 1 편 총칙

제 1 조 (목적)

본 약관은 서원레저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고 한다)가 운영하는 서원밸리컨트리클럽(이하 “클럽”이라 한다)의 주중회원의 모집, 입회, 운영 및 관리, 탈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

본 약관에서 “주중회원”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주말(토, 일요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) 및 공휴일(임시 공휴일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)이 아닌 평일에만 그린피 할인 등 회사가 정한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클럽의 회원으로서 제7조에 따른 회원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.

제 3 조 (적용)

본 약관은 클럽의 회원 모집에 응모 . 입회 신청한 자 및 클럽의 회원인 자 기타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려는 자 모두에게 적용된다.

제 2 편 주중회원

제 1 장 모집 및 입회

제 4 조 (모집)

회원은 공개 모집하며,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하여 회원 예정자를 선정한다.

제 5 조 (입회 절차)

제4조의 모집 절차에서 선정된 회원 예정자는 클럽의 회칙 및 이용약관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클럽 지정 양식의 입회신청서를 제출 및 입회보증금 기타 비용을 납입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입회보증금)

- ① 제5조에 따라 회원 예정자가 납입한 입회보증금은 그 이후부터 제7조 제3항의 기간동안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한다.
- ② 회사가 회원 예정자의 입회 신청을 불승인하거나 회원이 제13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회사는 해당 회원 예정자 또는 회원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되 이자 없이 원금만을 반환한다.

- ③ 전항의 입회 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받은 회원 예정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회원 자격이 상실된 회원(회원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)은 그 즉시 클럽 지정 양식의 탈회신청서를 작성하여 클럽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회사는 탈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회원 예정자 또는 회원에게 탈회 통보서를 발송함으로써 회원 예정자 또는 회원의 탈회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 의한 입회보증금의 반환시기는 전항의 탈회신청서 제출시 또는 탈회통보서의 회원 수령시에 회원과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 이 때 협의를 이루어 질 수 없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입회보증금의 반환시기를 정하여 이를 회원 예정자 또는 회원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입회보증금을 반환한다.

제 7 조 (회원자격의 취득 및 존속기간)

- ① 회사는 입회 예정자의 입회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입회 예정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회원명부에 등재하고 입회 신청 승인일로부터 30일 내에 회원증을 발급한다.
- ②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회원증을 발급한 날을 해당 회원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로 본다.
- ③ 회원은 제2항의 일자로부터 5년간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.

제 8 조 (회원자격의 제한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 단, 회원의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회사가 회원자격 취득을 승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1. 제14조(회원자격의 상실) 제2항의 각 호의 1의 사유로 제명된 사실이 있거나 동 조항의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
2. 제15조(회원자격의 정지)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된 사실이 있거나 동 조항의 회원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
3. 회원이었던 자로서 회원자격의 존속 기간 중 탈회하였거나 탈회 조치를 당한 자

제 2 장 회원의 운영 및 관리

제 9 조 (요금의 부담)

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클럽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이용시간 및 휴장)

- ① 클럽의 개장 및 폐장 등 이용시간은 계절의 변화나 일조시간 등을 참작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.
- ② 회사는 그의 사정에 따라 클럽을 정기 또는 임시 휴장할 수 있다.
- ③ 회원은 회사가 정한 클럽의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클럽 이용을 할 수 없다.

제 11 조 (이용 및 혜택)

- ① 회원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비회원보다 우선하여 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은 클럽이 별도로 정한 혜택을 받는다.
- ③ 회원은 클럽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으며, 클럽이 발행하는 각종 안내문 등을 배포 받을 수 있다.

제 12 조 (회원의 의무)

- ① 회원은 본 약관 및 클럽의 회칙과 골프장 이용약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(회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이용시간을 예약하여야 한다. 이 때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 및 시간에 회원과 비회원의 예약이 경합될 때에는 회원에게 해당 날짜 및 시간의 골프장 이용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나, 회원 간 예약이 경합될 때에는 예약 완결의 선후에 따라 우선권 여부를 결정한다.
- ③ 회원은 입회 시 회사에게 제출한 회원의 주소, 직장,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즉시 변경된 사실 및 내용을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때 회사가 변경 사항의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한 때에는 회원은 지체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자격의 양도)

- ① 회원은 회원자격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자격을 양수하려는 자가 제8조의 회원자격의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회사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. 이 때 회사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때에는 회원은 요청받은 자료를 회사에게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가 전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- 1. 회사는 회원자격을 양수하려는 자가 제8조의 회원자격의 제한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한 때에는 회원에게 회원자격의 양도에 대한 승인을 통보하며, 이 경우 회원 및 회원자격을 양수하려는 자는 회사가 정한 양식, 절차와 방법 등에 의해 회원자격을 양도 및 양수하여야 한다.
 - 2. 회사는 회원자격을 양수하려는 자가 제8조의 회원자격의 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한 때에는 회원에게 그 사실 및 회원자격 양도에 대한 불승인을 통보한다.
 - 3. 회사가 본항에 따른 확인 및 승인 여부 판단을 위하여 요청한 자료나 정보를 회원 또는/및 회원자격을 양수하려는 자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, 통보하는 등 회사를 기망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자격 양도에 대한 승인을 통보하거나 회원자격 양도에 관한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언제든지 회원 또는/및 회원자격을 양수하려는 자(양도절차가 완료되어 회원자격을 양수한 자 포함)에 대해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.
- ③ 회사가 회원자격의 양도를 승인하여 회원자격을 양도한 회원(이하 본조에서 “양도인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회원자격을 양수한 자(이하 본조에서 “양수인”이라 한다)의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은 양도인의 회원자격의 존속기간 중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④ 회사가 회원자격의 양도를 승인한 경우 양도인이 클럽에 납입 하였던 입회보증금은 양수인이 회사에 납입할 입회보증금으로 전액 대체, 갈음하며, 양도인은 회사에 대해 회원자격의 양도로 인한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

- ⑤ 양수인의 회원자격 존속기간 만료 시 회사는 양수인에게 제4항의 입회보증금을 반환 하되,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4 조 (회원자격의 상실)

-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 즉시 해당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탈회 처리된다.
1. 회원자격의 존속기간 만료
 2. 사망
-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사는 심사를 거쳐 해당 회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할 수 있으며, 회사의 제명 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해당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당면 상실하며 탈회 처리된다.
1. 경기보조자(캐디) 또는 클럽 직원에 대해 심한 욕설, 반말이나 막말 기타 모욕 .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한 경우
 2. 도박성의 과도한 금액의 내기골프를 한 경우
 3. 기물파손 등으로 클럽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클럽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
 4. 허위의 문서, 자료 또는 정보로써 회사를 기망하여 회원자격을 양도 . 양수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회원자격을 취득한 경우
 5. 기타 회사의 클럽 및 골프장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

제 15 조 (회원자격의 정지)

-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사는 심사를 거쳐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시킬 수 있다.
1. 제1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한 때
 2. 클럽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클럽의 운영을 방해 또는 경기 질서를 문란케 한 때
 3. 클럽의 회칙이나 이용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 4. 회비 또는 기타 비용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지체하고 클럽으로부터 납부 최고를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② 전항의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그 자격이 정지된 기간에 회원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였거나 클럽을 사용하지 못함 등을 이유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.

제 16 조 (골프카 사용책임)

골프카는 경기보조원(캐디) 또는 회사 직원만이 운전함을 원칙으로 하며, 회원 또는 회원의 동반자가 임의로 골프카를 운전하여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한 민.형사상의 문제는 해당 골프카를 임의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케 한 회원 또는 회원의 동반자와 골프카의 임의 운전을 권유, 방임한 회원 또는 회원의 동반자가 연대하여 책임진다.

제 17 조 (경기중단)

- ① 회사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경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거나 안전상의 문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경기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.
- ② 회원은 전항의 회사의 경기 중단 조치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.

제 3 편 이사회

제 18 조 (이사회)

- ① 본 약관에서 '이사회'라 함은 클럽 운영사인 서원레저(주)의 이사회를 말하며 그 구성, 의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원레저(주)의 정관에 의한다.
- ② 이사회는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정지 기타 회원 및 클럽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사, 의결 및 처리한다.

제 4 편 경기규칙

제 19 조 (경기규칙)

회사가 운영하는 클럽의 골프장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.

제 20 조 (로컬 룰 및 임시규칙)

클럽의 로컬 룰의 제 . 개정, 경기규칙의 변경 및 일시 적용할 규칙의 제정은 회사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행한다.

제 21 조 (상관습)
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상관습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른다.

제 22 조 (준용)
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, 공정한 일반 관행 및 골프의 일반 룰에 따른다.

부 칙

1. 본 약관의 개폐는 이사회 의결로서 행한다.
2. 본 약관은 2026년 07월 11일 부터 시행한다.